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증

사용자	성명(명칭)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속기관
	주소	

등록번호	허가기간
------	------

차명

운행목적

운행구간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저속전기자동차 운행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직인

소유자의 주의사항
1. 이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증을 허가기간동안 반드시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의 보기 쉬운 곳에 붙이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2. 운행허가증은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차량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3. 운행허가를 받고 허가받은 목적 또는 기간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15호의2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비 고
1. 재질은 접착식으로 합니다. 2. 접착제는 바깥부분에만 칠합니다.